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여성가족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출국금지 요청 요건으로 양육비 채무금액 5천만원 이상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로 확대(안 제8조)
- 나. 출국금지 요청 요건으로 양육비 채무금액 3천만원 이상 또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3기(期)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양육비채무자로 함(안 제17조의3)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2. 14. ~ 3.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의3제1항제1호 중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3기(期)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금지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

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기준 및 대상 등) ① 법 제14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한시적 양육 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 라 한다)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는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u>	제8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기준 및 대상 등) ① ----- ----- ----- ----- -- <u>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 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u> ----.
1. <u>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 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 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u>	<u><삭 제></u>
2. <u>양육비 채권자가 「한부모가 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여 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u>	<u><삭 제></u>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출국금지 요청 등)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	제17조의3(출국금지 요청 등) ① ----- -----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양육비 채무가 <u>5천만원</u> 이상인 사람 2. 양육비 채무가 <u>3천만원</u> 이상인 상태에서 <u>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국외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u> ②·③ (생략)	----- -----. 1. ----- <u>3천만원</u> ----- ----- 2.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3기(期)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②·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02) 2100 - 6354